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33
------------	-----

제출일자 : 2011.

제 출 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통합 및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설립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사회적기업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 등에 명시(안 제3조~제9조)
- 다.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라.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 수립·시행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시설비, 경영, 재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제14조)

- 마.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및 조세감면사항 및 의무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제18조)
- 바. 우리군지역내 민간기업 등 사회적기업 자발적 참여 장려와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19조~제2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조치없음.
- 다. 입법예고 : 2011. 7. 20 ~ 8.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달성군 조례 제 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심의위원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위원은 사회적기업 업무담당부서장인 국·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
 2. 대구지방노동청의 추천을 받은 소속 공무원 1명
 3. 사회적기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위촉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사회적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5조(우선구매의 촉진)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조세 감면)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법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사항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민간기업 등 참여 확대) 군수는 달성군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제19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등 모범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3. 전문가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